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55
----------	-------

발의연월일 : 2026. 8. 25.

발 의 자 : 조인철 · 박균택 · 정준호
박용갑 · 이해민 · 김의겸
김우영 · 안태준 · 어기구
이정현 · 문정복 · 이개호
양부남 · 안도걸 · 정진욱
서삼석 · 임문영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를 체결한 거래당사자 및 임대차계약거래를 체결한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부동산 거래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거래당사자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이와 같은 신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하면서,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하여 전자적 방식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스템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당사자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구축·운영”을 “구축·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의2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전자계약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거래당사자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의3제2항 중 “부동산정보체계”를 “부동산정보체계 및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u>구축 · 운영</u>) (생 략)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u>구축 · 운영 등</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의2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전자계약시스템”이라 한다)을 <u>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③ 거래당사자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 · 운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	② ----- ----- -----

고내용조사 및 제25조의 <u>부동산정보체계</u>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u>부동산정보체계 및 전자계약시스템</u>----- ----- ----- ----- -----.
--	--